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4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8월 30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된 조례의 보상금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된 보상금의 적용시기는 조례 시행 후 신고·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함 (안 부칙 제2조).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
신고·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·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.</p>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공익신고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을 준용하여”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3항 중 전단에 “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,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.”를 추가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·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보상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<u>공익신고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을 준용하여</u>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 (신 설) ----- ----- .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~⑧(생략)</p>	<p>제11조(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----- ----- (삭 제) ----- ----- 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,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.</u> ----- ----- (이하 같음) ----- ----- .</p> <p>④~⑧ (동일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·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.</p>